

# 남북한 저작권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North & South Korea

이찬도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Chan-Do Lee(cdlee@joongb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권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방송·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저작권재산권 | 저작권재산권리제한 | 북한저작권법 | 남북한저작권법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blems on 'System for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Law. The NK Copyright Law had appli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perficially, it may not be considered to get out of the grand frame of NK system. Especially, it is different that there is lack or short of contents on transfer, disposition, succession, trust, and so on for Author's Property Right. For example, free usages of Literary Works upon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were described as 9 cases including copy and translation for personal purpose; copy in the library, etc. However, there are many insufficient items in view of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cases, showing omissions of critical terminology such as publications of literary works, purpose of usage, scope of usage, etc. Therefore,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is interpreted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but to be legalized in terms of external announcement, and it seems not to be considered as the Author's Property Right Law with general standards enough to demonstrate the creativity freely.

■ keyword : | Author's Property Right |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 North Korean Copyright Law | Copyright Law in North and South Korea |

## I. 서론

### 1. 문제제기

남북한 교류협력이 제한적 또는 간헐적 상황으로 반복된 데에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되어 온 탓도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족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분석은 향후 남북간 문화예술의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북한저작물에 대한 일련의 분쟁사례<sup>1</sup>와 향후 국내에서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저작권법이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으며,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가능할 정도로 국제적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 1986년의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까지 제20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의 경우 지난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2141호로 제정<sup>2</sup>된 후 2006년 2월 1일 및 2012년 11월 13일 등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보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리에 대한 국제적 정세를 반영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법조문이나 법문구 수정, 삭제 또는 첨가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북한이 저작권법 개정에 소극적인 데에는 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다만 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틀 마련에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저작권법 구성과는 상당한 이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 WTO/TRIPs(1994)<sup>2</sup>와 같은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와의

상호관련성을 전제로 하면서 각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 및 개정을 하여 운용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북한의 저작권법이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을 지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저작물이 갖는 개인의 일상생활, 공공기관, 사회복지 차원 및 정보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확대하는 등 저작재산권의 권리 제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sup>3</sup>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상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등이다. 남한의 저작권법의 경우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에 걸쳐 다양한 방면에서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작물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적 차원을 반영한 내용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에서도 개인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등 9가지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저작권법체계는 정치적·이념적 특수성을 저작권법 체계 내에 반영하고 있고 성문법규의 규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남북간의 저작권분쟁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염두해 볼 때 법적·제도적 미비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 저작권법상이 특성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연구목적 및 방법

저작재산권자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을 위해 권리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1 주요분쟁 사례로는 북한 사회과학원이 펴낸 ‘리조실록’을 남한 출판사가 무단 복제 사건(1991년), 북한판 ‘동의보감’에 대한 국내 출판사의 무단 복제 사건(2000), 이 외도 소설 무단강 사건(1988), 갑오농민전쟁 사건(1989), 임격정 사건(1990), 영화 불가사실(1998) 등이 있다.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협정 부속서 1C로 발효된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다.

3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간에 차이가 있는데 독일은 ‘공정이용’과 같은 일반규정이 없으며, 프랑스는 TRIPs 3단계 테스트의 저작권법 도입에서 공중의 이용권을 강화하기보다는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정영거적 제한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정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제정목적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국가문화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 제한 조항은 저작권자에게 집중된 고유한 권리와 국가사회의 다원적인 발전이라는 대립적 관계 속에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북한 저작권법에서도 이러한 저작권제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체제의 특성상 남한의 저작권법과는 이질적이면서도, 미비된 부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추측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법률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향후 남북간 저작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때, 면밀히 연구·분석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저작권제한제도에 대한 특성을 남한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차이점과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기대되는 법제통합의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학연구의 연구방법인 법해석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제한 규정의 구성과 관련조문해설을 중심으로 남북간 저작권제한제도를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저작권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저작권제한이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제3자가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경 이용과 같은 공공 목적에 뚜렷한 경우로 한정된다.<sup>4</sup> 즉,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로 인해 “국

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sup>[2]</sup>는 취지에서 일종의 제한 규정인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저작권제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입법 취지 등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질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용자의 이용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이 공익적인 것인지 그 여부를 고려해 임의 규정인가 강행 규정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제한 규정들은 그 성격이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제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제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이 계약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남한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의 모든 제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성격을 따져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반면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이용)은 ‘강행규정성’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에 의하면 저작권 이용제도를 국가가 세우고 저작물 이용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한편, 저작권제한 규정의 성질이 적극적인 이용권인지 소극적 이용권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소극적 이용권으로서 반사적 이익 또는 항변 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다. 따라서 제한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일종의 항변권으로서 해석해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권적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이용권의 한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한 규정의 성격을 단순한 항변권만이 아닌 청구권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3].

4 남한 저작권법 제23조(제관절차에서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 등에서 복제), 제32조(시험문제로서 복제), 제33조(점자에 의한 복제),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 2(일시적 복제), 제35조의 3(공경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이용)

5 북한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 2. 선행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저작권법상 저작권리제한 제도를 다룬 논문이라기보다는 남북간 저작권법 규정 전체를 다루면서 일부분으로 언급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을 연구·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향후 예상되는 남북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경수 (2015.12)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북한 저작권법제도, 특히 북한 저작권과 소프트웨어보호법을 분석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살펴볼 내용으로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저작권법, 특히 남한 저작권법과 비교”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박종배 (2011)의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은 “남북한간 체제의 이질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쌍방간의 저작권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통합의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구성, 실체법, 절차법 등에 대해 비교하면서 향후 법제통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은석 (2011)은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통일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기여적 관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의 기여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통일대비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필요성 및 통일지향적 저작권법 질서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남경두 (2007)는 <북한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영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서 남북한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내 남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통일법제를 대비하는 초석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분희 (2006)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은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면책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사회·문

화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김상호 (2002)의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은 2001년 4월 5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승인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남북저작권 상호보호 방안의 모색을 제시하고 북한 체제를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1. 선행연구

저자	연구내용
최경수 (2015.12) [4]	·북한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필요성 제시 ·베른협약에 준하는 정도의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제시, 예를 들면 동 협약에 준하는 보호수준 및 디지털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법·규정 정비의 필요성 ·남북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에서 최우선 과제는 특별협정 체결의 필요성, 특별협정은 민족내부관계라는 전제에서 출발, 점진적 단계적 합의의 중요성 제시
최은석 (2011) [5]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정비가 요청되며, 남북한 통합의 수준은 저작권법의 운용방식에 영향을 받음. ·남한 저작권법상 ‘북한주민의 이용’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 ·남한 저작권법 제29조(비영리목적 공연·방송)를 확대 해석 적용하는 방안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 ·통일재원을 마련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
남경두 (2007.4) [6]	·북한체제에서의 저작권법의 주된 역할 강조, 고유문화중시, 자유이용 범위의 확대 등의 특성, 기술발전과 관련된 저작권법 대처의 미흡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과는 괴리가 있어 향후 불협화음 예상 ·남북한부속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저작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의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
정분희 (2006.3) [7]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남북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제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저작권법에 한시적으로 북한자료 활용을 위한 특례조항 필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의 상호보호조항을 발전시키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포함된 부속합의서 및 협정 체결 필요성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특수자료를 통일부로 이관하여 공개, 이용확대의 필요성
김상호 (2002) [8]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보호의 필요성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의 기초 마련의 필요성 ·저작물이용 시장의 확대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 ·북한의 작가단체와 대등한 교섭력을 지닌 단체의 필요성

## III.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

### 1.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의 목적

남한 저작권법의 제1조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자 및 저작권집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 모호하다. 저작자에게 과도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대한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산업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면 저작자의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양자간의 지속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산업의 제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 제32조<sup>6</sup>는 저작권산업 제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동법에서도 이처럼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균형적 논리에 초점을 두고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9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남한의 저작권산업 제한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도 많다.<sup>7</sup>

## 2. 개인적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의 저작물 이용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에 명시된 9가지 열거항목 중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남한의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사적복제에 대해 북한 저작권법에서도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되어 있지만 북한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미공표된 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용행위에서도 북한 저작권법

에서는 복제, 번역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외 편곡, 개작 등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사적 복제의 규정이 없다.

표 2. 개인 및 가정 차원의 저작물이용

북한	남한	비고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로서 비영리 목적, 개인적,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 가능	[사적복제 대상] .남: 공표된 저작물 .북: 저작물(미공표된 저작물도 포함) *북: 미공표된 저작물도 사적복제 대상 [이용행위] .남: 번역 편곡 개작 및 이들의 복제 .북: 복제, 번역 *북: 남한보다 좁은 범위의 이용행위

## 3.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1호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첫째, 면책장소에서 남한 저작권법의 경우 도서관 및 기타 시설 같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없이,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모두가 면책 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한 체제 선전용의 박물관, 기념관 등을 중요시 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장소가 공중의 이용 장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둘째, 복제대상으로서 남한 저작권법의 경우 보관된 ‘도서 및 공표된 도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어떤 도서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겨 주고 있다. 셋째, 면책요건으로서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조사·연구목적, 자체보존목적,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 등인데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아무런 관련 언급이 없다. 넷째, 복제수량 및 범위에서도 남한 저작권법과 달리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과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7 개인 및 가정차원, 도서관 등, 학교교육차원, 저작물인용,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 복제 등에서 미비된 내용이 있으며, 특히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표 3.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북한	남한	비고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복제 가능	[면책장소] .남: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북: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  [복제대상] .남: 보관된 도서 및 공표된 도서 .북: 불명확함(규정상 보관된 도서 외에 대출받은 도서 등 모든 저작물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면책요건] .남: 조사·연구의 목적, 자체보존의 목적, 도서관 대출 목적으로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 .북: 관련 규정 없음.  [복제한정] .남: 공표된 저작물로서 1인 1부 .북: 관련 규정 없음.

4.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제3항도 막연하고 광범위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남한 저작권법의 경우 교육기관을 고등학교 이하

표 4. 학교교육차원에서의 저작물 이용

북한	남한	비고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이하의 학교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음.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도 가능	[교육기관] .남: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이하의 학교, 특별법 등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분리 규정 .북: 학교라는 광범위한 범주  [이용제한] .남: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에 한함. :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북: "학교 교육을 위하여" 라는 막연한 표현  [이용형태] .남: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부득이한 경우 전부이용 가능)(법 제25조 2항) 및 번역, 편곡, 개작(남한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북: 복제, 방송, 개작을 할 경우

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분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히 '학교'라고 하여 그 범주가 모호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용제한의 경우 남한 저작권법의 '교육목적상'과 북한 저작권법의 '교육을 위하여'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에서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는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며, 양적인 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용형태의 경우 복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전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번역, 편곡, 개작으로만 되어 있을 뿐, 중요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5.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 이용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제4호는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한에서의 '국가관리'라 함은 "국가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무원과 위원회, 부, 각급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등을 말한다"[9] 이에 비교가 되는 남한의 저작권법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의 정도이다.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은 저작물의 이용목적, 이용범위, 용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특히 '방송'이 저작권자 제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물이든 북한정부관리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 이용

북한	남한	비고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이용할 경우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저작물 복제.	.남: 재판절차라 함은 '국가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상으로 규정함. 단, 저작권 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이용형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로 국한. .북: '국가관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면서 목적, 이용범위,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이용형태는 복제, 방송, 편집물 작성이며, '방송'이 국가관리에 포함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이 됨.

### 6. 저작물 소개를 위한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이용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의 제5호에 의하면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저작물을 내는 경우 저작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물 내용보다는 이용매체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언론매체에 게재되는 저작물은 크게 ‘뉴스’와 ‘뉴스저작물’인데, 전자는 사실(fact), 사건(event)을 전달하는 내용이며, 공유영역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10]. 그러나 뉴스에다 창작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뉴스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에서 ‘저작물’이 단지 뉴스인지, 뉴스저작물인지를 알 수 없다. 동 조항은 저작권리의 제한조항이라는 점에서 뉴스와 같은 시사보도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 저작권과의 비교했을 때 뉴스저작권으로서 해당 규정으로는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정도일 것이다.

표 6.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이용

북한	남한	비고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등에 의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해 복제 등 가능.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등 가능.	.남: 저작물 자유 이용의 본래 목적을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부수적인 이용으로서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까지 규정함. 이용범위 및 형태로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가능함. .북: 시사보도용으로 한정되지 않고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으로서 소개만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용범위 및 형태로서는 명확한 규정보다는 이용매체인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대한 복제·배포로 한정.

### 7. 저작물 인용에 이용

북한저작권법 제32조 제6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는 저작물 인용에 대한 면책조항으로서 남한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비교된다. 북한에서의 ‘인용’이란 “써 있는 글이나 이미 한 말 가운데서 이끌어와 쓰거나 그 한 부분을 옮겨다 쓰는 것”[11]으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을 옮겨 쓰는 것, 또는 복제로 해석된다. 특히 남한저작권법의 제36조 제2항에 근거해 볼 때, 번역까지도 인용의 범주로 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 7. 저작물 인용에 이용

북한	남한	비고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으로 인용가능	.남: 공표된 저작물로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한정, 양적·질적 제약으로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로 한정 .북: 조선말대사전에 근거해 볼 때, 북한에서의 ‘인용’은 일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남한과 달리 저작물의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음.

### 8. 저작물의 무료공연에 이용

북한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무료공연에 대한 권리 제한은 남한 저작권법의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와 가장 유사한 내용이다. 즉,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무료공연’은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도 같은 의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단지 ‘공연’인데 반해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공연과 방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무료 이용이 좁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동 법 제32조 제5호에서 별도로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대한 권리 제한을 확대 규정해 놓고 있다.

표 8. 저작물 무료공연에 이용

북한	남한	비고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며,	.남: 공표된 저작물로서 반대급부 등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물의 공연·방송에 대한 저작권리가 제한됨. 또한 이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연 가능함. .북: 무료공연은 반대급부가 없는 비

<p>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②당해 공연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 가능</p>	<p>영리목적 및 실연자에 대한 통상의 보수가 없는 경우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됨.</p>
--	---

9. 공공장소 저작물의 복제 이용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제8호와 비교가 될 만한 남한의 저작권법 조항은 사실상 없다. 다만, 동 조항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라는 공간적 개념 및 저작물의 복제권리 차원임 고려해 볼 때, 남한 저작권법 제35조와의 비교·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장소적 물리적 공간의 기준으로 볼 때, 남한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공공장소’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리용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12]. 따라서 남한에서의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공공장소’는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광장, 학교, 역, 병원, 도서관, 화장실 등으로써 실내뿐만 아니라 이들 건물의 외벽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저작권법에서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와의 공간적 개념을 비교해 보면,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둘째, 동일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북한 저작권법의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리가 제한되는 반면, 남한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는 이들 공공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저작자에게 전시권리를 남겨 두고 있다.

셋째,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단순한 복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 또는 교육적 차원의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넷째, 이용형태에서, 남한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용형태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건축물을 건축물로의 복제,”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의 복제,”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 “판매목적으로의 복제”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표 9. 공공장소 저작물의 복제 이용

북한	남한	비고
<p>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p>	<p>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저작물 원본 소유자가 해당 원본을 전시할 수 있음. 단,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금지. ②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략)</p>	<p>[저작권리의 범위] .남: 제35조 제1항은 공공장소에서 향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리 부여. 동 조항 제2항은 미술저작물등은 복제하여 이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복제권을 제한 .북: 제32조 제8호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제한</p> <p>[이용범위의 제한] .남: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예: 원본을 복제하여 편집저작물, 기타 2차저작물로 활용 가능) .북: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만 가능</p> <p>[장소적 개념] .남: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북: 공공장소 * 남북한 같은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됨</p> <p>[이용형태의 제한] .남: 건축물을 건축물로의 복제,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의 복제,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 판매목적으로의 복제 등은 복제 금지 .북: 해당 규정 없음.</p>

10. 맹인을 위한 저작물의 녹음, 점자로의 복제

동 법 제 32조 제9호는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로서 남한 저작권법 제33조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관련 규정에 해당되지만,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의 경우 시각장애는 1-6급으로 나뉘는데, 크게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함으로써 중증시각장애인(1-3급)과 나쁜 눈의 시력(시각장애 6급)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저작권법에서의 ‘맹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애매하다. 둘째, 저작물을 녹음·복제하려면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편적으로 미공표된 저작물은 저작권리가 없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표된 저작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용형태의 경우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점자로 복제·배포”로 규정함으로써 복제하여 배포까지 허용하는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배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형태는 남북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면책범위의 경우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녹음 또는 점자로의 복제로 한정되어 있지만 남한의 경우 전용기록방식의 복제, 배포 및 전송까지 허용하는 등 면책범위가 넓다.

표 10. 맹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 이용

북한	남한	비고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 ②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 및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면책조건] .남: 공표된 저작물 .북: 언급없음.  [면책범위] .남: 점자로 복제·배포,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 가능 .북: 저작물 녹음, 점자로 복제

#### IV. 평가 및 시사점

##### 1.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규정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리의 제한은 저작권법의 형성과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북한 저작권법 제21조(저작권자의 재산권리양도), 제22조(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계승) 및 제4장 저작물의 이용(제26조~제32조)은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규정이다. 권리변동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발생, 양도, 승계, 상속, 처분, 소멸 등을 말한다.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시점이고, 양도·처분·상속·신탁 등은 저작권리의 변동이며, 저작권리의 소멸은 보호기간의 만료에 해당된다. 북한 저작권법 제21조에서는 저작재산

권에 대한 양도 및 상속 규정은 있으나, 우리와 같은 신탁, 질권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sup>8</sup> 물론 권리 양도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동 법 제22조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대한 권리 계승의 규정으로서 개인재산권의 양도, 상속과 유사한 개념인 법인의 권리 승계로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리의 변동으로서 소멸은 보호기간의 만료,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해산 등에 의한 것이다[13].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저작권보호기간을 규정할 뿐, 상속인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한 저작권법 제26조는 저작물 이용의 기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써 사회주의 지도통제의 영역 속에서 저작권법을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및 제3조(저작물의 이용원칙)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저작물의 이용과 허가는 저작권자에게 있지만 그 이용절차와 방법은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은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시장질서에 의한 유통 및 이용허락인 반면 북한에서는 보급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4]. 그러나 대상을 기관, 기업소, 단체, 자연인에 해당하는 공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이 비록 국가의 지도 감독 하에 보급될 지라도 공민도 사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법 제27조는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고 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이 준물권적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우리의 저작권법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저작재산권 행사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이용허락) 받은 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무단 이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

<sup>8</sup> 실제로는 동 법 제32조 제5호에서 별도로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대한 권리 제한을 확대 규정해 놓고 있다.

다. 북한 저작권법 제29조(저작물의 리용범위)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라는 용어를 해석해 볼 때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와 유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허가’(license)는 저작권리의 이용허락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저작재산권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라는 특성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범위라 함은 이용형태, 장소, 시간, 사용료 등의 부가적인 내용들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당국이 정해진 가격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거래방식으로서 저작물 이용자들은 제정된 액수의 보수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15]. 보수는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당국으로부터 받는 보수이다. 이와 달리 저작물이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요금’은 북한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요금 결정권은 가격제정기관에 있을 명시하고 있다.

## 2. 남북한 저작재산권리의 제한규정 비교

저작권리 이용의 제한(use limitation) 제도는 저작권 침해의 수준에는 해당되지만 특요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위 ‘허용되는 행위’이다. 베른협약의 “합법적인 인용에 대한 권리, 수업목적의 이용, 언론의 이익을 위해 부여되는 예외, 복제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 영상 저작물 제작에의 기여” 등이 대표적이다[16]. 남한 저작권법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보편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다만 법적도대를 마련한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s) 및 의무허락(obligatory licenses)은 저작권의 이용제한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공공성과 보편적 유통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저작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북한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만, 동법 제27조(저작물의 리용, 허가)에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법정허락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승인’의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이라는 차원에서의 법정허락(statutory authorization)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저작권법상 허가와 법정승인의 이용형태 및 장소적·시간적 내용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어떤 식의 개정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표 11. 남북한 저작재산권리의 제한규정 비교

남한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리 제한(제23-36조)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제35조의 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 3. 국제적 협약과의 관계

1886년의 베른협약은 “특정한 상황에서 회원국들에

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sup>9</sup> 이로써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리의 제한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보편화 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들(limitations and exceptions)의 규정인 ‘교육목적’이나 ‘뉴스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이다. 북한 저작권법의 경우도 국제적 협약에 근거하여 저작권리의 이용제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국제조약상의 제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한 열거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법제23조~제35조에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북한 저작권법은 제32조에서 9가지 정도로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데다 시행규칙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서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1년 북한이 저작권법을 제정할 당시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맹국으로서의 의무조항 제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2003년 4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가맹국으로서 합당한 수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조치로서 2006년 2월 및 2012년 11월에 저작권법의 부분 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보다 전향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이라도 한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수준의 개정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WTO TRIPs 협정은 WTO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게 되고, 각 가맹국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법령을 동 협정에 상응할 수준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7].

9 국내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베른협약 규정들에 포함된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제13조에서 3단계 테스트(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한과 예외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저작물이 정상적인 사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리하게 해하지 않아야 한다.(민경제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7-88, 2011.2)

## V. 결론

북한 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및 제3조(저작물의 이용원칙)는 저작권법에 대한 북한의 기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동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 체제의 내재적 특성을 여실히 반영한 것으로써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저작권법 구성과는 상당한 이질성과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조절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의 저작물 자유이용 수준은 향후 전개될 지적재산권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저작물 이용에서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 조항이다. 동 조항에서도 북한당국의 정책기조가 잘 반영되어 있고, 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의 원인변수로서 북한 저작권법의 운용특성이 구체화되어 있다. 저작물의 이용은 권리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이 해당되는데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양도 및 상속 규정은 있으나 신탁과 질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규정하면서도 상속인 부존재에 대한 규정 등 주요한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에서는 국가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하고 이러한 규정하에 저작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한데 따른 고민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 제27조(저작물의 이용, 허가)는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집체저작물임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물론 동 조항 제3항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법정허락제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남한의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상당한 노력’ 등과 같은 조건이 없으며, 보상금에 관한 규정도 없다. 북한저작권법상의 또 다른 단점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로서, 동 법 제31조(저작물의 리용요금)에 의하면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와 다른 시스템이다. 따라서 북한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만큼 미비된 점이 많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한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1호부터 제9호까지 간단하게 목록 수준으로 열거되어 있어 남한의 저작권법 제한 내용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리 제한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의 규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각각의 내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선연적인 성격이 강하고, 단지 저작물이 공공재라는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만 평가된다. 저작권리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법률상 보호가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의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가?-,” 법조, 제56권, 제4호, pp.178-209, 2007(4).
- [7] 정분희,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63-194, 2006(3).
- [8]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pp.77-109, 2002.
- [9]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325, 1992.
- [10] 류종현, 뉴스저작물, 커뮤니케이션북스, p.12, 2015.
- [11]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1709, 1992.
- [12]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262, 1992.
- [13] 남한 저작권법 제49조
- [14] 북한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 [15] 박태운,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8, 2002(6).
- [16] 민경제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5, 2011(2).
- [17] WIPO, Panel Report WT/DS 114/R, 2000.3.17.

참 고 문 헌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저작권법, 법률출판사, 2012.

[2] 이상정,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 2002.

[3] <http://www.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90&cid=42238&categoryId=42248>

[4]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12).

[5] 최은석,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pp.309-335, 2011.

[6] 남경두, “북한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 자 소 개

이 찬 도(Chan-Do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상학석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박사)
  - 2008년 8월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엔터테인먼트경영, 지역축제, 저작권법